

의안 번호	1768	【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1. 5. 31.(월)
- 제출자 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5. 31.(월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6. 16.(수)

2. 제안이유

-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척 사항 중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가 제척되어, 경관관련 중복 심의/자문 및 행정절차 이원화 등 불편함을 초래함.
또한 울산광역시 내 타 구·군 경관조례와 형평성을 맞춤.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경관사업협의체 구성·운영 (안제9조~ 제11조)
- 경관위원회 기능·위원회구성·위원임기·위원회 운영 등 (안제24조~ 제31조)
-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

4. 근거법규

- 「경관법」 제29조 (경관위원회의 설치)
- 「경관법 시행령」 제22조 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

5. 검토의견

- 법령에 근거하여,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인 경관위원회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 하였고
특히,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제척사항 중 “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” 을 추가함으로써
경관 관련하여 중복 심의/자문 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음

<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/자문을 거친 것으로 보는 사항 (제척사항)>

- 1)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
- 2)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

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.<개정 2017.6.26.>

- 또한 법령에 근거한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체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
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으며
상위 법령 등 검토 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
조례 개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